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11일, 최보윤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3.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3.12.)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3.1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최보윤 의원)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

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사후관리 규정이 없으며,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되는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장이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설치와 사후관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은호)

개정안은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이후에도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시간이 지나 기 설치된 편의시설이 현행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상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 관리의 지속성·책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과 같은 이동 약자의 접근성·안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보건복지부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증진센터에서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이후, 장애인 편의시설의 유지·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도에 실시한 운영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전국 1,938개소 대상시설 중 장애인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건물은 1,367개소(유지·관리를 70.5%), 관리가 미흡한 건물은 571개소(훼손·철거를 29.5%)로 나타났다.

다만, 개정안의 취지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결과,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지 않거나 훼손·철거된 경우, 시설주관기관이 보수·개선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에 근거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인증) 제도의 경우는 현행법 제10조의5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한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대상시설은 시설주에게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개정안 부칙은 시행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 홍보와 하위법령 정비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일을 연기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모니터링 결과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지 않거나 훼손·철거된 경우 시설주관기관이 시설주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위 법령 개정 및 제도 홍보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조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지 않거나 훼손·철거된 경우 시설주관기관이 시설주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보수·개선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위 법령 개정 및 제도 홍보 등을 고려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조정하고 적용례를 신설함(안 9조의4제2항 신설 및 부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의4제1항의 “편의시설의”를 삭제하고, 안 제9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지 아니하거나 훼손·철거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설주등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보수·개선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안 제9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을 “따라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으로 하며, 안 제9조의4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며, “기관에”를 “법인 또는 단체에”로 하고, 안 제9조의4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안 부칙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4(편의시설 모</u> <u>니터링) ① 시설주</u> <u>관기관은 시설주등</u> <u>이 설치한 편의시</u> <u>설이 제8조에 따른</u> <u>편의시설의 설치기</u> <u>준을 준수하는지</u> <u>여부를 모니터링할</u> <u>수 있다.</u> <u><신 설></u>	<u>제9조의4(편의시설 모</u> <u>니터링) ① 시설주</u> <u>관기관은 시설주등</u> <u>이 설치한 편의시</u> <u>설이 제8조에 따른</u> <u>설치기준을 준수하</u> <u>는지 여부를 모니</u> <u>터링할 수 있다.</u> <u>② 시설주관기관은</u> <u>제1항에 따른 모니</u> <u>터링 결과 편의시</u> <u>설이 제8조에 따른</u> <u>설치기준에 맞게</u> <u>유지·관리되지 아</u> <u>니하거나 훼손·철</u> <u>거된 경우에는 그</u> <u>내용을 시설주등에</u> <u>게 통보하고 기간</u> <u>을 정하여 보수·</u> <u>개선 또는 원상회</u> <u>복을 명하는 등 필</u> <u>요한 조치를 할 수</u> <u>있다.</u>

	② <u>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③ <u>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④ <u>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③ <u>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④ <u>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⑤ (개정안 제4항과 같음)
--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편의시설 모니터링)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설치한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지 아니하거나 훼손·철거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설주등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보수·개선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 설치기준 미충족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4(편의시설 모니터링) ①</u> <u>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설</u> <u>치한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u> <u>설치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u> <u>모니터링할 수 있다.</u> <u>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u> <u>른 모니터링 결과 편의시설이</u> <u>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u> <u>유지·관리되지 아니하거나 훼손·</u> <u>철거된 경우에는 그 내용</u> <u>을 시설주등에게 통보하고 기</u> <u>간을 정하여 보수·개선 또는</u> <u>원상회복을 명하는 등 필요한</u> <u>조치를 할 수 있다.</u> <u>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u> <u>른 모니터링 업무를 제9조의3</u> <u>제1항에 따라 확인업무를 대행</u> <u>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u> <u>수 있다.</u> <u>④ 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u> <u>라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u> <u>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u> <u>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u>

	<u>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⑤ <u>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u> <u>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u> <u>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u> <u>정한다.</u>
--	--